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4. 21 선고 2019가단152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20. 1. 14.

판결 선고2020. 4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1997. 10. 23. 접수 제1211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3. 8. 25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오택원

별지